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후보자의 성실 의무 규정〉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93호)

2025. 9.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 · 이만희 · 유용원 · 박준태 · 고동진 · 강대식
강민국 · 이인선 · 김정재 · 성일종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8. 21.

3. 회 부 일 : 2025. 8. 22.

※ 의안번호 : 1229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의무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성실의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권이 편중됨에 따라 나타난 학연·지연에 입각한 정실인사 또는 편중인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통제하기 위함임. 동 제도 도입 이후 인사청문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타 기관을 견제·통제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임.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부실하게 응하거나 위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 답변 등에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다시금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